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 2 / 11 통권 1766 · 176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설 연휴로 인하여
1766 · 1767호 통합 발행되었습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신구조문 대비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 적용
- 경영의사결정의 Best Practice(1)
- 근로 · 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신구조문 대비표
(핵심내용)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동업자 지분 승계로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
이 된 경우라도 공동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토지와건물 일괄양도시 토지가와 건물가액 안분 방법〉

거래구분, 개념	토지, 건물 안분계산방법·조건		적용방법
토지·건물가액 분명	제3자간 합리적 경쟁 시세대로 토지·건물 따로 계산 표기		계약서상 실거래가액 : 토지가액 + 건물가액×110%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의 차이 30% 미만		토지와 건물 실거래대로 가액 인정(상동)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의 차이 30% 이상		정당한 이유 : 실거래대로 인정 이유없음 : 안분계산함
토지와 건물가액 불분명 <계산 산식> 토지가 (부가세 없음) 실거래가× 토지가 + 건물 ×110%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액 존재		실거래가×감정평가액 비율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액 부존재	기준시가존재	실거래가×기준시가 비례로 계산
		일부 기준시가	① 장부가액으로 배분 ② 나머지 기준시가로 배분
		기준시가 없음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배분
	기준시거나 감정평가액 적용불가 (국세청 고시 2025-26 참고)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례하여 안분
건축중 건물의 토지·건물 양도		토지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실거래가 안분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운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66 · 1767호 / 주간 6 · 7호

2026. 2. 11.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설 연휴로 인하여 통권 1766·1767호가 통합 발간되었습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토지가와 건물가액 안분 방법	표지
CEO의 경영 산책	경영판단 원칙 적용 - 경영의사결정의 Best Practice(1)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항공사 마일리지 차감하여 투숙 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상여지급건 - 영리법인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시 자금 출연 관련 질의 - 회사 사업부 매각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근로 · 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6
매일 절세 재무요점	- 국민성장펀드 · 기업성장펀드 세제혜택 - 연말정산 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직접증빙' 8가지	8 9
직장인Survival	모든 직장인에게 필요한 영업 마인드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사전법규재산-252, 2025.06.25) -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 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 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 함 (사전법규국조-387, 2025.06.11)	11 12
세정 뉴스와 해설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내달 3일까지... 홈택스서 '비과세 자가진단' 제공	13
마케팅 Tax consulting	동업자 지분 승계로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공동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함	11
세무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신규조문 대비표(핵심내용)	1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9

경영판단 원칙 적용

- 경영의사결정의 Best Practice(1)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상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사회 등의 경영의사결정에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을 위한 경영의사결정의 Best Practice 요약하여 살펴본다.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을 위한 실무적 요점

- 정보 수집 및 분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합리적 검토와 필요성 평가: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며, 이사들은 정관 및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위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 및 위험 평가: 의사결정시 이해상충을 배제하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손실발생 가능성과 이익 획득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의사결정 기록화: 이러한 정보 수집·검토 절차 및 판단 과정은 이사회 결의 등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사전 승인 및 중요사실 개시 절차가 동반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다.

● 적용 요건 비교

적용 요건	주요 내용	적용 요건 미달시
충분한 정보수집 분석	경영상 결정 전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 취득·검토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불가
신의성실한 판단	회사의 이익을 목표로 권한 내에서 선의로 결정	책임 인정 가능

정관·법령 권한 내 행위	이사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위	원칙 적용 어려움
의사결정 기록 및 승인	이사회 결의와 중요사실 개시, 공식 기록 남김	사후적 법적 책임 위험

● 이사의 정보수집 절차의 Best practice

이사가 실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모범 사례로 인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 및 관련부서 공식 질의: 이사는 경영진·임원 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구체적인 질의서나 보고청구권 을 행사하여 핵심 자료를 확보한다.
- 외부 전문가 및 자문 활용: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나 법률·회계 자문을 병행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한다.
- 정보의 적시성·충분성·신뢰성 평가: 의사결정권자가 정보의 시의성(적시성), 충분성, 조사자 및 자료의 신뢰도, 회사의 영업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이사회 보고 및 기록 보존: 정보 수집·검토 과정과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여 투명성과 책임소지를 명확히 한다.
-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 방지: 내부정보 보호와 외부 유출 방지 대책, 필요 시 비밀유지 합의 체결 등 정보 보안 절차를 병행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 실무적 사례와 지침

- 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진행·재무자료 등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해 상세 자료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제3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산업 및 시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상 결정에 반영한다.
- 서면 및 구두 보고를 병행하고, 결정 과정과 결과를 의사록에 남겨 법적 책임소재와 행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사 마일리지 차감하여 투숙 하는 경우

Q 고객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투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호텔이 항공사와의 계약이 아닌 중개업체와 계약하고, 고객이 중개업체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며 호텔 예약을 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은 중개업체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고객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저희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위와 같이 마일리지 차감하여 객실을 제공할 경우 면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자기적립이외의 마일리지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의 보전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파견근로자 상여지급건

Q 파견 근로자 상여 직접 지급 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연말상여로 300만원 정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1.08.18. 비슷한 문의 내용의 답변에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급여는 파견사업주에 통보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만약 파견 사업주에 근로소득 금액으로 추가 금액을 신고 요청 한 뒤 지급할 경우 사용 사업주는 위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A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려는 경우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받고 해당 상여를 지급하시면 되며, 아니면 귀사가 위임범위 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직접 지급해서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영리법인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시 자금 출연 관련 질의

- Q**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영리법인이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추진 중으로 출연금을 모두 당사에서 지급합니다.
이 때 당사는 지출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으로 보는게 타당한가요?
- A** 주세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주류의 수입시 과세하는 것으로, 귀사의 질의는 주세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사의 영업장에서 귀사가 매입하지 않은 물품을 먼저 판매후 추후 매입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행위인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사 사업부 매각

- Q** A 법인의 적자 사업부를 B 법인에 매각하려함
- 매각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인원과 부채 및 자산(비품(컴퓨터, 책걸상 등), 관련물품(홍보물품, 재고자산 등))이 일괄 승계됨.
질문 1: 위의 매각 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사가 월매출의 5배내지 10배 등으로 자체산정시 문제가 될지요?
질문 2: 매각 대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질문 3: 만일 A사의 대주주가 B사와 특수관계일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지요?
- A**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무조건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도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적법히 해당하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세 면세거래입니다.

근로 · 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 등과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연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 말(근로소득 · 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제출함

지급명세서는 이자 ·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 등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일종의 과세자료이다.

즉,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자발급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등이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 된다.

이처럼 각종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관련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 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

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그 밖의 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가 원칙임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매체 제출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품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비과세근로소득과 1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등
-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③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 ⑤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국민성장펀드 · 기업성장펀드 세제혜택

	정책	세제 혜택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지원 위해 5년간 150조원 규모 조성	투자자에게 9% 분리과세 적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비상장 혁신 기업에 투자	투자자에게 9% 또는 14% 분리과세 적용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금 절반 이상 벤처에 투자	소득공제 규모 확대 (현행 300만원)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세금 부담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 12% 적용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차등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배제
양도세*	양도세 기본 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30%포인트 가산
임대	2주택자 시가 12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과

* 오는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



연말정산 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직접증빙' 8가지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 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②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의료비 공제 챙기기
③	암·치매 등 중증환자 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
④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 확보
⑤	영어·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입학 전 지출한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⑥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이나 학교 발행 확인서 준비
⑦	국외 학교 납입증명서와 유학 자격 증빙, 송금일 환율 서류 구비
⑧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설탕세 시행 국가별 사례

국가	시행방식	주요 효과 및 특징
영국	설탕 함량에 따른 차등과세(2018년~)	음료 제조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추는 리포머레이션(성분조정)활발, 음료 설탕량 약 47% 감소
프랑스	설탕 함량 비례 과세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며 국민들의 인식 변화 유도
노르웨이	초콜릿·사탕 등에 고율과세	설탕소비량이 10년 전 대비 27% 감소했으나, 인근 국가(스웨덴)으로 가서 사 오는 '원정 쇼핑' 풍선효과 발생
멕시코	가당 음료에 10% 과세 도입	1년 만에 가당 음료 구매량 12% 감소,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더 큼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30일 (금)	2월 2일 (월)	2월 3일 (화)	2월 4일 (수)	2월 5일 (목)
미	달	러	(USD)	1427.00	1436.70	1457.30	1449.00	1451.20
일	본	엔	(JPY)	932.89	924.01	936.66	930.19	925.39
영	국	파	운	(GBP)	1970.62	1963.18	1991.76	1984.99
캐	나	다	달	(CAD)	1057.94	1052.07	1065.20	1062.12
홍	콩	달	러	(HKD)	182.81	183.90	186.56	185.46
중	국	원	(CNH)	205.46	206.79	209.87	208.90	209.23
유	로	화	(EUR)	1708.33	1701.20	1718.59	1712.50	1713.43
호	주	달	러	(AUD)	1005.75	995.78	1013.11	1017.05
싱	가	폴	달	(SGD)	1128.96	1127.80	1145.27	1140.90
말	레	이	시	(MYR)	363.34	364.46	369.69	368.47



모든 직장인에게 필요한 영업 마인드

1. 영업은 설득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영업 마인드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신뢰로 이어진다.

2. 내 업무를 '상대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습관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의 역할과 관심사에 따라 전달 방식은 달라진다.

상사에게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을, 동료에게는 협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습관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낸다.

3. 거절을 개인의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업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거절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거절은 개인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조건이나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음 시도는 훨씬 차분해진다.

4. 신뢰는 일관된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단 한 번의 인상적인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증명하는 태도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상대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 신뢰가 가장 강력한 영업 자산이 된다.

5. 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전달한다

영업 마인드는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자신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업무 제안이나 의견 제시는 더욱 단단해진다.

최 신 판 례 예 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사전법규재산-252, 2025.06.25

Ⅰ 질 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25.3.14. 전 실시)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만(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이하 "쟁점거래"),
 - (질의1)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쟁점거래의 결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이 상증법§4①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Ⅱ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Marketing Tax consulting

동업자 지분 승계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공동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함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기준법규소득-121, 2025.04.09

Ⅰ 질 의

-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승계를 통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가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Ⅱ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사전법규국조-387, 2025.06.11

Ⅰ 질 의

- 질의법인이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와
 -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Ⅰ 회 신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거래가 있는지 여부

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504, 2025.06.25

Ⅰ 질 의

- 이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50%) 및 상속(25%)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 장기임대주택과 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20>(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및 거주주택 해당 여부

Ⅰ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내달 3일까지... 홈택스서 '비과세 자가진단' 제공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을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다수 선택하고 양도주식수·양도금액 자동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 이 서비스는 참고용이며, 확정적 진단은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장 '다주택자 중과, 연 수익률 정기에금 수준으로 하락'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가액이 20억원이 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수치를 올렸다.

세간에는 10억원짜리 집을 팔면 60~70%를 세금으로 떠간다고 알려져있지만, 양도세 중과는 주택 수,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임 국세청장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보유기간 15년을 조건으로 삼아 보유공제 외 특별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주택자들은 26억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5.9억원, 3주택 이상은 6.8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익률이 41%, 32% 정도 되지만, 연 수익률로 따지면 27%~21%로 정기에금 수익률 정도로 하락한다.

15년간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간 세금과 부담금 특히 은행이자를 고려할 때 확연히 수익이 떨어진 셈이다.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 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 건으로 급증했다.

만일 이들이 정부 정책을 의심해 집을 안 팔았다면 이득을 보았겠지만,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팔아 실질적 손해를 봤다.

임 국세청장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는가?"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재경부가 만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현행	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의2. (생략) <신설>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략) ⑦ ~ ⑬ (생략) ●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2025년 12월 31일) <신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⑬ (현행과 같음) ●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2028년 12월 31일) 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현	행	개	정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 100분의 10 2.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 100분의 5
⑤ ~ ⑧ (생략)		⑥ ~ ⑨ (생략)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2025년 12월 31일) ② · ③ (생략) ④ (2025년 12월 31일) <신설> <신설>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2028년 12월 31일)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2028년 12월 31일)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	



현	행	개	정
		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신 설>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⑥ (제5항)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5년 12월 31일) 1. · 2. (생 략) <신 설>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 1. ·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	

현행	개정
업, ……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생략)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u>100분의 3</u>에 상당하는 금액 ③ ~ ⑥ (생략)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신설>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u>배당소득</u> 1의2. ~ 4. (생략) ⑤ ~ ⑧ (생략)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략) <신설>	업, ……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u>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금액 ④ ~ ⑦ (생략)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의2.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현행	개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5년 12월 31일) 1. (생략)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②·③ (생략)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 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8년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	

현행	개정
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현행	개정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950만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B :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C :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현행	개정
나.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B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C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B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B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C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나.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현행	개정
A + B + C A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B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C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현행	개정
② ~ ⑨ (생략)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 ⑨ (생략)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신설>	
●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현물출자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 3. 외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현	행	개	정
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생 략) 1. (생 략) <신 설>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③ (생 략)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③ (현행과 같음)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생 략)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나) (생략) <신설>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나) (생략)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 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 ⑧ (생략) <신설> <신설>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나) (현행과 같음) 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가목 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 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



현행	개정
<신설> <신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u>세액감면신청</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2) (생략) <신설>	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u>세액감면신청</u>,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현행과 같음)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2) (현행과 같음) 3)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

현행	개정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 우 가)·나) (생략)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 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 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우 :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경우 : 5년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가목2) 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 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 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 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 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 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 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

현	행	개	정
			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근무인원·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근무인원·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생략) ④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신설>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⑧ ~ ⑩ (생략)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행	개정
⑤ (생략)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⑤ (생략), ⑥ (생략)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현행	개정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u>100분의 12</u>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u>제25조의6</u>, 제26조, 제28조, <u>제28조의3</u>,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 ⑥ (생략) ●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⑧ (생략) ●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u>100분의 15</u>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u>제25조의6</u>, <u>제25조의8</u>, 제26조, 제28조, <u>제28조의3</u>, <u>제28조의5</u>,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 100분

현행	개정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 <u><신 설></u>	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신 설></u>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



현행	개정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② (생략)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 제146조의2에 따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⑥ (생략) ●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 제146조의2에 따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에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소



현	행	개	정
		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계좌 운용·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행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현행	개정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	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7조의9 (생략)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② (2025년 12월 31일) ③·④ (생략)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2025년 12월 31일) ② 삭제 ③·④ (생략)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생략)	● 제97조의10 (현행 제97조의9와 같음)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② (2026년 12월 31일) ③·④ (현행과 같음)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 ②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신 설>			
● 제99조의15【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	



현행	개정
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생략) <신설> 나. 다.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	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32【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다. 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

현행	개정
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③ (생략) ●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단서 신설> ●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3.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	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직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



현행	개정										
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 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r> <th>특례배당소득</th><th>세율</th></tr> <tr> <td>2천만원 이하</td><td>총 금액의 100분의 14</td></tr> <tr> <td>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r> <td>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td>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td></tr> <tr> <td>50억원 초과</td><td>146,8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tr> </table>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50억원 초과	146,8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 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50억원 초과	146,8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②·③ (생략)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기본공제 금액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금액 :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2025년 12월 31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2028년 12월 31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13. (생략) ~ ⑤ (생략)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13. (현행과 같음) ~ ⑤ (생략)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2025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



현	행	개	정
	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신 설>	2. 중고자동차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2. (생략) ② (생략)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생략)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2의2. (생략) 2의3. 삭제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생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삭제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제1호·제2호·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



현행	개정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 19의3. (생략) 20. 삭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4조제1항의 ……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u>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u> 22. ~ 24. (생략) ② (생략)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 <u>2025년 12월 31일</u> 2.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 19의3. (현행과 같음) 20. 삭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4조제1항의 ……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u>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 매매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u> 22.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 <u>2028년 12월 31일</u> 2.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u>2028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개정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 ⑩ (생략)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7. (생략) ③ ~ ⑨ (생략)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현행	개정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⑪ (생략)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 ④ (생략)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생략) 1. 삭제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및 제126조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⑪ (현행과 같음)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삭제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현행	개정
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② (생략) 1. 삭제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③·④ (생략)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② (생략)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략)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생략)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신설>	
●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현행	개정
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략)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생략)	●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2026년 1월 1일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2027년 1월 1일